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7. 6 선고 2021가단119880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7. 6.

##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 중 3/7에 관하여,  
가. 2018. 5. 29.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2항, 1항

판사 최혜승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간의 지위

원고는 현재 소의 체납자 B(이하 '체납자'라 합니다)에 대하여 국세채권 141,073,480원을 가진 채권자이고, 체납자와 피고는 亡 C의 배우자와 자입니다. 亡 C의 상속인으로는 피고 A, 체납자 겸 배우자 B, 자녀 D이 있습니다(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 2. 피보전채권의 존재

#### 가. 조세채권의 발생

원고 산하 은평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은 아래 <표1> 과 같이 체납자에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체납자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소 제기일 현재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5건 141,073,48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조회).

<표1> 체납자 B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내역

| 세목        | 납세의<br>무구분 | 귀속          | 납세의무<br>성립일    | 고지일            | 납부기한           | 고지세액           | 체납액        | 관할 |
|-----------|------------|-------------|----------------|----------------|----------------|----------------|------------|----|
| 부가가치<br>세 | 완납세<br>자   | 2014.0<br>1 | 2014.07.2<br>5 | 2014.09.0<br>2 | 2014.09.3<br>0 | 10,117,00<br>0 | 17,249,210 | 은평 |
| 부가가치<br>세 | 완납세<br>자   | 2014.0<br>1 | 2014.07.2<br>5 | 2014.09.0<br>2 | 2014.09.3<br>0 | 43,533,25<br>0 | 73,126,140 | 은평 |
| 부가가치<br>세 | 완납세<br>자   | 2014.0<br>7 | 2014.09.3<br>0 | 2014.10.0<br>1 | 2014.10.2<br>5 | 5,000,000      | 8,480,000  | 은평 |
|           |            |             |                |                |                |                |            |    |

|      |     |        |           |           |           |           |            |    |
|------|-----|--------|-----------|-----------|-----------|-----------|------------|----|
| 부가가치 | 완납세 | 2014.0 | 2014.09.3 | 2014.10.0 | 2014.10.2 | 10,707,55 |            |    |
| 세    | 자   | 7      | 0         | 1         | 5         | 0         | 18,527,290 | 은평 |
| 종합소득 | 완납세 | 2014.0 | 2014.12.3 | 2016.06.0 | 2016.06.3 | 14,912,57 |            |    |
| 세    | 자   | 1      | 1         | 1         | 0         | 0         | 23,690,840 | 강동 |
| 계    |     |        |           |           |           | 84,270,37 | 141,073,48 |    |
|      |     |        |           |           |           | 0         | 0          |    |

(단위 : 원)

####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

피고는 父 C이 2018. 3. 30.에 사망하자, 2018. 5.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C 소유 지분전부에 대하여 채납자인 母 B를 포함한 상속인들과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갑 제3호증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18. 6. 1.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접수번호 제89478호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갑 제4호증 등기사항증명서).

#### 다. 소결

이 사건 사해행위일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2018. 5. 29.이고 위 <표1>에서 본 바와 같이 각 국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은 모두 사해행위일 이전에 성립하고 있었으므로 사해행위에 대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3. 사해행위

#### 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에 의한 지분전부 이전등기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판결 등).

이 사건의 경우, 상속인인 피고, 채납자 및 소외 D은 2018. 5. 29. 이 사건 부동산 중 亡 C 지분전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하는 상속재산분할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C 지분전부 이전등기(등기원인 2018. 3. 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를 마쳤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의 존부에 관하여는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한 2018. 5. 29.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나. 사해행위 당시 채납자의 무자력

채납자는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은 88,571,428원<sup>1)</sup>(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 7분의 5)인 반면, 소극재산은 189,073,482원으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습니다(갑 제2호증 채납유무 조회, 갑 제4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참조, 갑 제5호증 공동주택가격조회, 갑 제6호증 금융조회회신내역)

<표 2> 2018. 5. 29. 당시 채납자 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 원)

| 적극재산     |            | 소극재산 |            |    |
|----------|------------|------|------------|----|
| 내역       | 가액         | 내역   | 가액         | 비고 |
| 이 사건 부동산 | 88,571,428 | 근저당  | 48,000,000 |    |

1) 공시가격 124,000,000원의 채납자 소유지분 7분의 5(2004년 취득 지분 2분의 1과 상속지분 14분의 3 합계)에 해당하는 가액

|                    |            |                          |             |  |
|--------------------|------------|--------------------------|-------------|--|
|                    |            | E은행 대출<br>(계좌번호 1<br>생략) | 9,568,000   |  |
| F조합<br>(계좌번호 2 생략) | 1,003,358  | E은행 대출<br>(계좌번호 3<br>생략) | 10,400,000  |  |
| G은행<br>(계좌번호 4 생략) | 407,566    | 조세채무                     | 126,662,010 |  |
| 합계                 | 89,982,352 | 합계                       | 194,630,010 |  |

#### 다. 소결

채납자는 사해행위일인 2018. 5. 29.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아래 <표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 5. 29.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평가액 124,000,000원에 본인 상속지분 14분의3에 상당하는 금액 26,571,428원의 책임채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계약은 당연히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표 3> 채납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포기한 부동산

| 소재지                | 구분        | 면적(㎡) | 평가액(원)      | 지분   | 포기한<br>평가액(원) | 평가기준             |
|--------------------|-----------|-------|-------------|------|---------------|------------------|
| 서울 강동구 H 제4층<br>I호 | 다세대<br>주택 | 59.08 | 124,000,000 | 3/14 | 26,571,428    | 공시가격<br>(갑 제5호증) |

#### 4. 사해의사

채납자는 배우자 C이 2018. 3. 30. 사망하여 배우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상속 지분만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미납세금이 상당하여 정상적으로 상속 등기시 관할세무서인 은평세무서, 강동세무서에서 채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하여 질 것을 알고 공동상속인들과 모의하여 2018. 5. 29.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을 포기한 사실로 보아 상속 포기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5. 피고의 악의

##### 가. 관련판례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닌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등)

##### 나. 이 사건 피고의 악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채납자의 자로서 채납자의 채무초과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채납자의 사해의 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채납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 피고의 악의가 추정되므로 자신이 선의라는 사실은 피고가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것임

니다.

## 6. 제척기간

원고는 채납자의 배우자 C에 대한 상속재산관련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2020. 9. 9. 일람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에게 상속되고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일로부터 5년,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았습니다.(갑 제7호증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관련 증빙서류 요청서)

## 7. 원상회복의 방법

① 원칙적으로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할 것이나, ②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③ 채납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률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라는 점, ④ 말소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추가적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亡 C에게서 채납자에게로)를 거쳐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상대로 채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할 것을 구하고자 합니다.

## 8. 결어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납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C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충분히 알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채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앞으로 경료된 C 지분전부이전등기에 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별지]

부동산의 표시

[집합건물] 서울특별시 강동구 H 제4층 I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J

(1동의 건물의 표시)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 다세대주택

1층 131.68㎡

2층 132.40㎡

3층 132.40㎡

4층 132.40㎡

지층 83.4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강동구 H 대 245.4㎡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4층 I호 철근콘크리트조 59.08㎡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279.2분의 31.28

